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을 “기념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제16조제4항 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등의 방

법으로 할 수 있다”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집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제5항 중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으로, “내용, 방법,”을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인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식개선교육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

가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하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식개선 업무의 위탁)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 관리 및 점검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5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 <u>기념일 중 보건 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u>	2. ----- ----- <u>기념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u>장애 인식개선 교육</u>) ① (생 략)	제16조(<u>인식개선교육</u>)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 <u>장 애 인식개선 교육</u> ”이라 한다)을 <u>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u>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 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 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교 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연 1 <u>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교육대상자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달리 정할 수 있다.</u>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생략)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생략)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③ 인식개선교육-----.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현행과 같음)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현행과 같음)

④ 인식개선교육-----

-----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집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소속 직원·학생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 국가 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인원과 --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식개선교육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신 설>

<신 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하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 실시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인식개선 업무의 위탁)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 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신 설>

구축·운영

2. 법 제25조의2 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 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
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 관리 및
점검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인식개
선교육기관의 지정·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
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
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u>보건복지부장관</u>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25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1